

과업지시서

1. 사업명 : 『DDP 종합안내소 이전 및 임대공간 시설물 철거』 공사

2. 과업목적

: DDP 종합안내소가 임대공간으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종합안내소의 이전과 임대공간(종합안내소)의 시설물을 철거하고, 철거된 시설물을 향후에도 사용이 원활하도록 장비를 보관·관리하고자 합니다

3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

4. 과업내용

- 안내데스크 : 안내데스크 분리·철수·보관
- 안내사인물 : 기존 안내사인물은 철수, 이전 장소의 안내사인물 제작
- 디지털 미디어 : 키오스크와 디지털 미디어 2종 17개 철수 및 보관물품 제작.
- 빔 프로젝터 : 철수 후 분리 보관.

5. 과업 세부 사항(세부내용 및 과업절차)

- 안내데스크 : 기존 안내데스크를 안전하고 향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분리·철수 보관
- 안내사인물 : 안내사인물은 종합안내소는 철수하고, 이전 장소는 제작·설치함.
- 디지털 안내사인물 : 매표안내와 디지털 안내사인물 2종 17개를 철수하고 데이터는 백업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, 모니터 합체와 운반용 장비를 제작함.
- 종합안내소 상부에 설치된 빔 프로젝터는 철수하여, 분리·보관 가능토록 함.
- 시설물과 장비의 철수 후 마감은 기존의 바닥, 천정 등과 동일하도록 마감 처리함.

6. 기타 (과업수행 일반사항)

가. 일반사항

- 1) 본 공사는 서울디자인재단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지시서상의 용어 해석과 과업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·지시에 따른다.
- 2) 공사수행은 최신의 전문기술력을 활용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우리 서울디자인재단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3) 공사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.
 - 발주처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할 때
 -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업체의 귀책

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
- 상기 계약해지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공사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함.

나. 과업변경 및 공사기간의 연장

- 1) 공사계약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과업범위 및 공사금액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한다.
- 2) 공사기간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없다.

다. 과업수행 성과물

- 1) 공사 후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 설명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또한 공사 후 발주처에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·보완하여야 한다.
- 2) 본 공사와 관련하여 입수된 자료와 산출물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라. 재공사의 실시

- 1) 발주처의 준공 검사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.

마. 비밀의 준수

- 1) 공사업체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공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